

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(동양화,서양화,조소전공)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 3.12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미술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각각 3 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②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전공별 회화, 조소 각각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전공별 출제한다.

③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④ 합격기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,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⑤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본 학과의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외국어 능력 기준은 토익 500점 이상 또는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 관련 수업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. (개정 2015.3.12.)

**제6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①석사학위과정은 실기 중심의 심화과정 이므로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②박사학위과정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% 이상을 충족하고,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 (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.)

2.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,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(공동 지

도교수 포함)을 제외한다.

3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4.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.
5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**제7조(논문지도위원회)** 본 학과는 박사학위 과정이 없으므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.

**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(2015.03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

[○○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]

작성일 : 200 년 월 일

작성자 :

1.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

성 명		박사과정기간	200 . . . ~ 200 . . . (6년 개월)		
청구논문제목					
지 도 교 수		전 공 분 야			
현 직 장 명					
부 서		직 위		전 화 번 호	

2. 발표논문의 실적요약

구 분	심 사 대 상 논 문		기 타 사 항	
	건	점 수	건	건
국 외 논 문			국 외 논 문	
국 내 논 문			국 내 논 문	
국외학술회의			국외학술회의	
국내학술회의			국내학술회의	
총 점 수			보고서, 특허, 잡지기사 등	

3. 논문발표실적

구 분	논 문 명	저널명/ 발표기관	년월	저자명 (순서)	점수	관련도
논문지게재	국외					
	국내					
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	국외					
	국내					
기 타 사 항						

-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.

4. 특허실적

구 분	특 허 명	등록(출원)번호	등록일	등록자	점수	관련도
국내						
국외						

붙임 ; 증빙자료 ○부

